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명시 등〉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9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소방안전교부세 개요	3
2. 개정안 검토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개정안의 검토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욱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23.
3. 회부연월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재원으로,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그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일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되어, 최초 노후 소방장비·시설의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장활동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방 소방재정의 부족으로 지역별 소방서비스 및 소방력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현장대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동결 중인 수당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안전 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분야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Ⅲ. 검토의견

1. 소방안전교부세 개요

지방교부세란 현행법 제2조제1호1)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력 편차를 보전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임.

지방교부세는 현행법2)에 따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지방교부세의 구분]

구분		목적	재원
보통교부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내국세 정률분 ^{주)} 의 97%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지연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40%
	재난안전관리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50%
	국가지방협력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지방 협력 사업 촉진	내국세 정률분의 3% × 10%
부동산교부세		지방세(종합토지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후의 지방재원 감소 보전	종합부동산세의 100%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관리 강화 및 시설 확충 수요 대응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

주) 내국세 정률분: 내국세에서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 및 종합부동산세·목적세를 제외한 것의 19.24%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이 중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³⁾ 2015년에 신설된 것으로서,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를 재원으로 하며⁴⁾ 사용 대상사업이 신설 목적과 동일하게 ① 소방 인력 운용, 소방장비·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 안전관리 강화(이하 “소방분야”)와 ②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이하 “안전분야”)로 제한⁵⁾되어 있음.

3)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4)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5)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분야: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방 인력 운용

나.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1) 개정안의 주요내용

④ 소방분야 배분액 중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2%를 소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2항 단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 ----- ----- ----- ----- . --경우 분야별 교부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부 하며, -----의 견에 따라-----.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는 제1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u>충당하여야 한다.</u>	1. 소방분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 2. 안전분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 ----- ----- ----- ----- ----- ----- ----- ----- ----- 충당하고, 100분의 20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교부---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동 개정안을 포함하여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하려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 표와 같이 총 8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22대 국회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배분비율			일몰기한
		소방분야 : 안전분야	(소방분야 중) 소방 인건비	(소방분야 중) 소방관 수당	
현행		담배분 40%이상 : 5%이하	담배분 25%	-	2024년말
2204198	김상욱의원	담배분 42% : 3%	현행과 같음	담배분 2%	폐지
2204653	윤건영의원	담배분 40% : 5%	현행과 같음	-	
2205295	용혜인의의원	담배분 45% : 0% ※ 명칭: 소방교부세로 변경 ※ 교부권한: 소방청장에게 이관	현행과 같음	-	
2205301	이달희의원	담배분 40% : 5% ※ 15% 범위 가감조정 허용 ※ 소방분야는 소방청장 의견에 따라 교부	현행과 같음	-	
2205337	양부남의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2205370	정춘생의원	담배분 40% : 5%	현행과 같음	-	
2205476	신정훈의원	담배분 51.495% : 26.495% ※ 총재원: 담배분의 45% → 77.99%로 확대	현행과 같음	-	
2205623	박용갑의원	담배분 40% : 5% ※ 명칭: 각각 소방교부세·안전교부세로 분리·변경 ※ 교부권한: 소방청장에게 이관	현행과 같음	-	

주) 담배분: 개별소비세 담배분 세액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개정안의 검토

①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률명시·비율조정·일몰폐지

소방안전교부세의 규정 연혁을 살펴보면,

i) 2015년 1월 1일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당시에는 그 재원이 개별 소비세 담배분의 20%였으며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 배분 기준 없이 소방분야·안전분야에 모두 사용할 수 있었음.

ii) 그러나 소방분야 장비·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며 201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26328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특례가 신설되어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개별 소비세 담배분의 15%) 이상을 소방분야에 배분하도록 하였음. 이후 동 특례는 2017년에 3년(2020년말까지), 2020년에 3년(2023년말까지), 2023년에 1년(2024년말까지)씩 각각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iii) 2017년 7월에는 정부 조직 개편⁷⁾으로 국민안전처의 기능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및 신설 소방청으로 분산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관리본부)에게 이관하되 소방분야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9조의4 제1항 후단⁸⁾이 신설됨.

iv) 2020년 4월에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7)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

8)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그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로 인상되고 인상분인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25%를 소방 인력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9조의4제2항 단서9)가 신설되어, 소방분야 : 안전분야의 배분비율이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0% : 5%인 현행 체계가 정립되었음.

[소방안전교부세 개편 연혁]

시행일	재원	교부권자	배분비율			일몰 기한
			소방분야		안전분야	
			인건비	시설장비확충 등		
2015.1.1.	담배분 20%	국민안전처장관	-	배분비율 없음		2017
2015.7.1.						
2017.7.26.						
2018.1.1	담배분 45%	행정안전부장관	담배분 15% 이상	담배분 5% 이하	2020	
2020.4.1		※소방분: 소방청장				
2021.1.1.		의견 청취要				
2024.1.1.						
			담배분 25%			2023
						2024

주) 담배분: 개별소비세 담배분 세액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의 적정성 및 일몰기한 연장·폐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주로 그 일몰기한 연장시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

소방청을 포함하여 소방분야 배분비율 상향 및 일몰기한 연장·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9)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첫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후인 2017~2022년간 인력이 약 40% 증가(47,457명 → 65,935명)하여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인건비 제외) 배분액 예산 3,183억원 대비 각종 지출 소요는 연말까지 6,383억원으로 전망되어 3,00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 안전 분야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2024년 예산 9,254억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¹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2023년말 조성액 2조 6,056억원) 등의 대체 재원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를 포함하여 소방분야 배분비율 상향 및 일몰기한 연장·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소방분야 또한 안전분야의 일환으로서 소방분야 : 안전분야 배분이 없어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둘째, 소방안전뿐 아니라 교통안전·시설안전 등 다른 안전분야 투자가 시급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구분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며, 이에 17개 시·도 모두 현행 일몰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어,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의 적정성 및 일몰기한 연장·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찬성·반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현재 법률 및 시행령 부칙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조정 및 일몰기한 연장·폐지 여부는 관련 부처간 이견이 존재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서 국회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¹¹⁾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가급적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개정 소요가 발생할 때에도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소방공무원 수당에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2% 교부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교부액 중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목적의 수당 지급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11) 제21대 국회에서도 의안번호 2105729 이명수의원안, 2111617 김용판의원안, 2124202 오영환의원안, 2124405 권인숙의원안, 2124421 전봉민의원안 등 다수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방분야 : 안전분야 배분비율의 조정 및 일몰기한 연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끝에 현행 체계를 유지하며 일몰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내려진 것임.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공무원 대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당 외에 소방공무원 등에만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화재진화수당·위험근무수당 등이 있음.

이 중 화재진화수당은 소방청·소방기관·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화재진화·조사 또는 해상구조·구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소방청·소방기관 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 지급되고 있고, 위험근무수당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공무원 직종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소방부문 공무원에게는 월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두 수당은 각각 2001년·2016년 도입 또는 인상된 후 23년·8년째 동결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상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¹²⁾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수당의 지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데 i) 부산광역시 등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 없는 수당 인상은 다른 소방분야·안전분야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추가 재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ii) 인천광역시 등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이데일리, 「교정직 수당도 17만원인데...소방관은 24년째 8만원 제자리」, 2024.3.14.

문 의 처
02)6788-5333